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2. 6. 4.(월), 10:00
- 장 소 : 안동 선비수련원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고부자, 김경표, 김광억,
김명자, 김용수, 장헌덕, 정명섭(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아산 외암마을 이준봉가옥 내 원두막(체험장) 설치	공개
2	경주 양동마을 내 창은정사 대문 설치	공개
3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주변 한지공예관 증축	공개
4	하회·양동마을 휘호석 설치	공개
5	경주 양동마을 이동건가옥 진입로 및 마당 정비	공개
6	아산 외암마을 주변 하천 사방공사	공개
7	안동 하회마을회관 신축	공개
8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개
9	구미 쌍암고택(중민 105)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0	영양 서석지(중민 108)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1	양주 백수현가옥(중민 128) 주변 단독주택 신축(5동)	공개
12	진접 여경구가옥(중민 129)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3	진접 여경구가옥(중민 129)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고성 어명기가옥(중민 131) 주변 단독주택 신축(11동)	공개
15	청원 유계화가옥(중민 138)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6	영동 김참관고택(중민 142)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7	가평리 계서당(중민 171) 생태공원조성사업	공개
18	의성 소우당(중민 237) 내 편의시설(부엌 및 화장실) 설치	공개

【검토사항】

19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공개
20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21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1. 아산 외암마을 이준봉가옥 내 원두막(체험장)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이준봉가옥 내 원두막(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풍 증가음식의 보전 및 계승을 도모하고 체험 등 상품화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2012년도 가풍 증가음식 계승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체험장 설치가 필요함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86-2
- (4) 신청내용 : 이준봉가옥 내 원두막(체험장) 설치
 - 규모 : 1동, 건축면적 19.25㎡
 - 구조 : 한옥초가(원두막), 자재(목재, 석재)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동 신청지는 문화재지정구역(원지형 보존) 내로 고증 자료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추가로 제출한 고증자료에는 원두막이 있었던 근거는 없으며, 단지 블록조스레트 지붕 형식의 창고가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민속마을 내 고증되지 않은 건물 신축은 마을의 완전성, 진정성면에서의 문화재 경관 훼손과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5. 7)

- 현 신청지에 대한 고증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함

(2) 아산시 의견

- 종가음식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2012 가풍종가음식계승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장을 설치하는 사항임. 가옥 내에 음식체험장으로 사용하려고 초가형식의 원두막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설치 시 문화재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고증되지 않은 건물 신축은 마을의 완전성, 진정성면에서의 문화재 경관 훼손

2. 경주 양동마을 내 창은정사 대문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창은정사의 대문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재는 창은정사 진입로에 대문이 없어 차량의 무분별한 통행으로 인해 부지가 훼손되고 관광객의 무질서한 출입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문 설치가 시급함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6번지
- (4) 신청내용 : 경주 양동마을 내 창은정사 대문 설치
 - 규모 : 대문 폭(6m), 높이는 기둥부분(1.55m), 대문(1.33m)
 - 재질 : 목재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양동마을 내에는 대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상존하고 있음. 충분한 고층 없는 마을 내 대문 설치하는 마을의 완전성, 진정성면에서의 문화재 경관 훼손과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단,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무분별한 관람객들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가로막(목조)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마. 참고사항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5.21.)]

- 직접적이고 충분한 고증자료가 없고 기 마련된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디자인가이드라인 : 고증에 따라 설치유무를 결정하며, 형태와 구조는 집의 규모와 담의 모양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대문은 전통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형태 또한 전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고증되지 않은 대문 설치에 마을의 완전성, 진정성면에서의 문화재 경관 훼손

3.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주변 한지공예관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의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주변에 한지공예관을 증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재 한지공예관은 면적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한지 체험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지 산업 육성 및 관람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지 체험장을 증축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8
- (4) 신청내용 :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주변 한지 공예관 증축
 - 구조 : 판넬 × 판넬기와
 - 규모 : 136㎡(17m × 8m)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40m 이격

라. 검토의견

- 증축하고자 하는 한지공예관의 신청 위치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곳으로 가건물형태로 설치할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기와형태 건물과는 조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5.21.)]

- 신청도서대로 시행할 경우 관광단지 계획 당시 전통마을에 적합하게 조성한 경관을 부분적으로 저해하고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경관을 일부 차폐하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관람객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곳으로 가 건물 형태로 설치할 경우 경관 저해

4. 하회 · 양동마을 휘호석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및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주변 대통령 휘호석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회 ·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호석을 설치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및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및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4) 신청내용 : 대통령 휘호석 설치
 - 1안 : 휘호석(오석, 1.4m×0.6m×1.04m), 받침대(화강석, 1.8m×0.9m×0.5m)
 - 2안 : 휘호석(오석, 1.4m×0.6m×1.42m)
 - 대상문화재의 관계 : 하회마을(지정구역), 양동마을(10m 이격)

라. 검토의견

-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 ·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2010. 7.31.)을 기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 휘호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5.21.)

- 보행자의 관람동선과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높은 곳에 설치 하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모·색상·재질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안동시·경주시 의견

- 관람객의 동선에 휘호석 설치 시 하회·양동마을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 경관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제1안대로 시행함)

5. 경주 양동마을 이동건가옥 진입로 및 마당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이동건가옥의 마당 리모델링 및 진입로를 건식황토포장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양동마을 내 이동건가옥의 마당 및 진입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음. 이에 마을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고려, 친환경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진입로의 건식황토포장 및 마당을 정비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28번지 외 / 992번지
- (4) 신청내용 : 이동건가옥 마당 리모델링 및 진입로 건식황토포장
 - 정원조성
 - 철거(기존 콘크리트 432㎡), 포장(마사 포장 157㎡, 카프 포장 275㎡)
 - 시설물 : 장대석 경계석 21.9m, 자연석 경계석 100.9m, 장대석 포장 7.22㎡, 자연석 놓기 9점, 우물모양 석물 1점, 물확 1점
 - 이식(소나무 1주), 식재(소나무, 산수국, 봉선화 등)
 - 진입로 포장
 - 철거(기존 콘크리트 190㎡), 포장(건식황토 포장 300㎡)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형태로 되어있는 마당 및 진입로를 전통적인 마을 이미지와 맞게 황토포장, 수목식재 등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경주시 의견)

- 문화재구역내이며 기존 주택 마당과 진입로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마사토로 마당을 조성하고 진입로부분은 건식황토 포장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사항임. 콘크리트 제거사항이므로 양동마을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짐

바. 의결사항

- 가결

6. 아산 외암마을 주변 하천 사방공사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하천 사방 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산간이나 산록에 접한 계천으로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나 강우에 의해 하천이 범람하여 노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한 계류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계천의 중횡침식을 방지하고 산각을 고정하여 계류의 안전유출을 기하고자 사방공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1(임) 외 16필지
- (4) 신청내용 : 아산 외암마을 주변 하천 사방공사
 - 전석 기슭막이 : 높이(1.7m), 공사구간(약655m)
 - 전석 바닥막이(6개소) : 폭(3.5m), 높이(1.5m), 물받이 길이(3m)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400m 이격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의 공사구간 중 일부가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약 400m 이격된 1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여름철 폭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방사업으로 문화재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아산시 의견)

- 아산외암마을 1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방사업으로 아산시청 산림녹지과에서 하천 사방 600여 미터를 정비하여 여름철 폭우시 피해를 저감시켜 주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임. 외암마을에서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름철 폭우 시 비 피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공사 시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7. 안동 하회마을회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마을주민의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 고취와 민속마을 방문객의 마을내 체험공간, 놀이마당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기 위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함
 - 농어촌공사의 '태극권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임
-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9
- (4) 신청내용 : 안동 하회마을회관 신축
 - 구조 : 한식 목구조(정면 5× 측면 6칸의 'ㄷ'자 평면)
 - 벽체(외위고 회벽 마감), 처마(홀처마, 와구토 마감)
 - 지붕(맞배지붕, 팔작지붕 복합형태)
 - 건축면적 : 123.12㎡
 - 건물높이(사무동 4.7m, 익랑 4.6m, 회의 및 강의동 6.3m)
 -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마을 바깥)
- (5) 사업비 : 537,000천원('10년도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라. 검토의견

- 하회마을 내 교육 및 체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마을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신축 예정지는 마을 바깥에 위치하고, 건축형태 또한 한식 목구조로 주변의 여왕기념관이나 소방서와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며, 문화재 경관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안동시 의견)

- 마을주민의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 고취와 민속마을 방문객의 마을내 체험공간, 놀이마당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기 위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8.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왕곡마을이 2000. 1. 7.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보수정비가 실시되었음. 1차년도 왕곡마을 10개년 정비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 2차년도(2013~2022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왕곡마을을 지속가능한 전통민속마을로 만들어가고자 함
- 이에 따른 왕곡마을 종합정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연구용역 개요

- (1) 용역명 :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2) 용역기간 : 2011. 4. 4 ~ 2012. 3.28
- (3) 수행기관 : 000
- (4) 주요내용 : 총 80개 사업, 403.7억원
 - 유형자원 정비사업(29개, 211.6억원)
 - 문화재 원형보존(불량변형시설 정비, 가옥복원사업, 가옥정기 보수)
 - 마을공동시설·마을기반시설(공동창고·축사, 진입로·안길 정비)
 - 편의시설 정비(욕실·부엌 정비, 저잣거리 확장, 관람편의시설 설치)
 - 무형자원 정비·발굴사업(20개, 63.7억원)
 - 민속발굴 사업(가옥별 스토리텔링, 민속자료·놀이 발굴)
 - 기록화 사업(인물사전 편찬, 설화 기록화), 주변환경 보전
 - 축제 발굴·지원(민속축제 정착화, 계절별 축제 지원, 정기공연)

- 인적 자원 발굴 및 교육지원사업(14개, 17억원)
 -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마을자치회 지원, 출향인사 고향방문)
 - 주민역량강화(주민전문가 교육, 외국어가이드 육성, 지역대학 연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17개, 111.4억원)
 - 활성화 기반구축사업(마을체험학교, 탐방열차, 게스트하우스)
 - 소득 활성화 사업(마을 민박운영, 유기농 개발, 약용식물 재배)
 - 왕곡브랜드 조성사업(통합캐릭터 개발, 특산품, 브랜드 홍보)
 - 마을 모니터링 사업(관광객 행태 조사·분석, 정비계획 사후관리)

다.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문화재위원 000, 000, 000 / 2012. 5.30.~31.)등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보완·수립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의결사항

- 가결

9. 구미 쌍암고택 주변 다가구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주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구미 쌍암고택」 주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속분과 1차('12.2.6), 2차('12.4.2.) 회의 시 부결되었으나, 건축면적을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보전)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외 7인(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320-2(이격거리 5m)
- (4)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대지면적		1,349㎡								
건축면적		381.464㎡								
연면적	구분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계
	1층	82.59	37.31	37.31	37.31	37.32	37.32	37.32	37.32	348.80
건폐율 및 용적율		28.28%, 25.49%								
층수 및 높이		1층, 4.7m								
외장 및 지붕		금속기와, 강회마감, 경사지붕								

라. 검토의견

- 민속분과 1차('12.2.6.), 2차('12.4.2.) 회의 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단지로 구성된 비교적 큰 건축물의 규모로 인해 당해문화재의 가치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1.17.(1차))

- 당해 문화재 뒤편 좌측의 옛 집터에 건립하는 주택으로 용도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앞쪽 2층 부분과 뒤쪽 수평으로 긴 형태는 배후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2) 구미시 의견

-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소유자인 최열과 그 형제들이 당해 문화재는 보호하고, 노후에 이웃하여 거주할 새로운 주택을 문화재 후면에 신축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규모축소, 건물재배치 등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재설계

10. 영양 서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영양 서석지」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허용기준(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개·보수만 허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경북 안동시 용상동 1632 세영리첼아파트 105-1205)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1
- (3) 신청위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260, 365-6(이격거리 : 172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1,122㎡
 - 건축/연면적 : 89.64㎡, 79.02㎡
 - 건폐율/용적율 : 7.99%, 7.04%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5.6m
 - 구조 : 벽돌구조
 - ※ 현지조사 의견 반영하여 ' 12.5.31. 수정·보완도면 제출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아 농가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단독주택의 외관을 주변 한옥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5.25.)

- 사업예정지는 1구역이나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는 170m 정도 이격된 옛 집터에 농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진입도로변이고 한옥들이 다수 있는 지역으로 향후 유사 위치의 신청 등을 고려할 때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관(지붕, 벽체의 재료 및 색채)을 수정·보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영양군 의견

- 신축부지는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172m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태화당고택, 연당동석불좌상)로부터 80m 떨어져 있으며 문화재의 시계에서 벗어나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부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11.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5동)

가. 제안사항

경기 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에 단독주택(5동)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속분과 1차('12.2.6), 2차 회의('12.4.2.) 시 부결된 사항임
-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보존구역(신축불가)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외 2인(서울 성동구 행당동 376번지 행당푸르지오아파트 103동 302호)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가옥」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36-7(이격거리 : 447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5동)
 - 대지면적 : 4,727m²
 - 건축/연면적 : 579.0m²
 - 건폐율/용적율 : 18.7%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5개동), 7.2m
 - 구조 : 황토색벽돌치장쌓기, 경사지붕, 기와마감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예정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으로 절토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문화재 전면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000,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4.27]

- 당해 문화재의 전망에 위치한 안산을 절토하여 많은 동의 가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요한 전망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1.12]

- 마을공간구조에 있어 주산과 안산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바, 현 신청지는 안산에 해당하므로, 본 신청은 문화재 전통건축에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양주시 의견

- 해당 민원은 기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방향 차폐림을 조성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2층에서 1층으로 낮춰 재설계하여 신청한 사항임을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시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가 문화재 전면경관 훼손

12.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속분과 2차 회의('12.4. 2.) 시 부결된 사항을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으로 용도에 있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허용기준(2구역) : 주택 5m이하, 1층(평지붕) / 8m이하, 1층(경사지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서울 송파구 오금로 432 삼환가락아파트 8동 906호)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90-1 외 3필지(이격거리 47m)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 대지면적 : 786㎡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47.50㎡(가동 220.00, 나동 127.50)
 - 규모 및 높이 : 지상 1층(2동), 5.2m

라. 검토의견

- 건축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하였으며 1동의 큰 건물을 2동으로 나누어 계획함. 건물의 용도가 순수한 사무소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000,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4.27]

- 건립예정지는 2구역에 속하는 곳으로 건물의 규모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다만 용도가 벗어나지만 순수한 사무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단, 지붕과 벽체는 무광의 재료로 하고 색상은 명채도가 낮은 것으로 하도록 함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3.9]

- 현상변경허용기준으로 볼 때 신청건물의 용도가 적합지 못함

(2) 남양주시 의견

-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문화재에서 내려다보이는 마을에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였음. 문화재보다 낮은 지역이며, 외관을 통나무재질의 판넬, 전통한식기와강판 판넬로 계획하였으며, 2012. 4. 2. 불허가되어 규모를 축소하고, 1동 → 2동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바. 의결사항

- 가결

13.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에 단독주택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속분과 2차 회의('12.4.2.) 시 부결된 사항으로 사업 예정지를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함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허용기준 : 주택 5m이하, 1층(평지붕) / 8m이하, 1층(경사지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351)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10-4외 1필지(이격거리 103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07㎡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54.37㎡ / 214.95㎡
 - 규모 및 높이 : 지상 2층(옥탑층), 8.4m(평지붕)
 - 구조 및 마감 : 철근콘크리트, 조적 및 화강석

라. 검토의견

- 당초 신청건은 현지조사 시 「진접 여경구가옥」의 좌측 능선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였음
- 본 건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신청 부지를 문화재로부터 우측으로 보다 이격시켜 능선에서 벗어나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허가해도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남양주시 의견>

-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문화재보다 낮은 좌측면으로 수목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 1층~2층 규모의 주택들이 있음
- 동일 신청인의 단독주택 신축(210-7번지)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어 70m→103m 이격된 210-4번지에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음

바. 의결사항

- 가결

14. 고성 어명기가옥 주변 단독주택 11동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가옥」 주변에 단독주택 11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고성 어명기가옥」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으로 개별 영향검토(지방자치단체) 구역이나 고성군에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 32-2)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가옥」
 - 소재지 :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551-1
- (3) 신청위치 :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 114(이격거리 : 200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11동)
 - 대지면적 : 9,877m²
 - 건축/연면적 : 1,058m² / 1,756m²
 - 건물층수 및 높이 : 지상 2층, 지하 1층, 8.2m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는 문화재로부터 30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나, 문화재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조망되며 절토 등으로 인해 산림 및 문화재 전면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5.22.)

- 당해 문화재에서 직접 바라보이는 바로 앞 전망 상에 놓여있는 중요한 앞산을 절토하여 비교적 많은 가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 고유의 자연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2) 고성군 의견

- 사업 신청지는 문화재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농경지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음. 해당 문화재의 정면 길 건너 맞은편 나즈막한 언덕에 위치한 사업 신청지는 어명기가옥을 조망하기 위한 시야를 가리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산림 및 문화재 전면경관 훼손

15. 청원 유계화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원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가옥」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민속분과 2차 회의('12.4.2.) 시 부결된 사항을 계획을 변경하여 재 신청하였으며 「청원 유계화가옥」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신축 불가)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가옥」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385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산 284-5, 284-7, 16-21 / 284-5
(이격거리 약 200m)
- (4) 신청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493.92m²
 - 건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 층수 및 높이 : 1층, 2동(각 1동), 9m

※ 신청인이 다른 동일 규모 및 용도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임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는 1구역(원지형보존)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 규모 및 용도(공장)가 허용기준상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며 당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1) 서면 검토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5.22)

- 당초 신청 건물의 규모와 위치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차폐 식재만하여 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경관의 주된 요소인 건축물에 변화가 없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3.13)

- 신청 위치는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당해 문화재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으나 마을에 얼마 남아있지 않는 야산 구릉이고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용도의 건물이라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3) 청원군 의견

- 교통제어기 제조시설 신축공사로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함이 타당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환경 저해

16.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허용기준(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최고 높이 5m이하 및 1층 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361번지)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361(이격거리 : 300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30m²
 - 건축/연면적 : 97.82m²
 - 건폐율/용적율 : 15.526%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5m
 - 구조 :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 ※ 현지조사 의견 반영하여 ' 12.5.30. 수정 · 보완도면 제출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300m 이격되어 있으며 직접 조망되지는 않음
- 현상변경허용기준상으로는 농업용 시설물만 가능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이 당해 문화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단, 건물의 높이는 허용기준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5m(1층) 이하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5. 3.]

- 당해 문화재에서 300m 정도 이격된 조망되지 않는 곳에 건립하는 단독주택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볼 때 건축적으로 높이가 1m 정도 높고 용도가 주택이란 점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용도와 경관상으로 보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높이는 1m정도 낮추어 기존 범위내로 하면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2) 영동군 의견

- 양강면 괴목리 361(전)번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과 이격거리 300m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지역이나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되는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경관 보완

17. 가평리 계서당 주변 생태공원조성 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1호 「가평리 계서당」 문화재구역 및 인접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평리 계서당 문화재구역 내 수목 식재 및 정면 인접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가평리 계서당(중요민속문화재 171호)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01번지
- (3) 사업내용(생태공원 조성)
 - 위 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06번지 일대(문화재지정구역 경계와 인접)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사업비: 380백만원(광특사업비)
 - 규 모
 - 조경 : 23종 약 1,247주
배롱나무 2주, 산딸나무 3주, 산단풍나무 4주, 청단풍 3주, 명자나무 2주, 조팝나무 100주, 자산홍 550주 등
 - 시설물 : 정자 1개소, 등 의자 3개, 전통담장 58.5m, 전통수로 176.8m 등
 - 포장 : 호박돌포장 46.54㎡, 마사토경화포장(T100) 260.23㎡, 마사토경화포장(T200) 50.67㎡, 제주석관석포장 66.76㎡ 등

라. 검토의견

- 계서당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 다만 정면 진입부지에 정자 1동 신축을 포함하여 큰 규모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경우 당해문화재를 위축시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전통가옥 배치 형태인 문전옥답을 훼손

18. 의성 소우당 내 편의시설(부엌 및 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안채 및 사랑채 등에 편의시설(부엌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성 소우당 기존 가옥 내에 편의시설인 부엌·화장실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경북 의성군 금성면)
- (2) 대상문화재 : 의성 소우당(중요민속문화재 237호)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우리 171-2
- (3) 신청위치 : 문화재 구역 내
- (4) 사업내용 : 생활기본 편의시설 설치
 - 안채 : 기존 재래식부엌을 입식부엌으로, 동측채 마루방 및 온돌방을 부엌, 화장실로 보수 등
 - 사랑채 : 기존 변형된 보일러실 겸 화장실 보수 등
 - 안사랑채 : 기존 재래식부엌을 입식부엌으로 보수 등
- (5)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80백만원 / 자부당 20백만원)

라. 검토의견

- 안채 마루방을 부엌으로 보수하는 부분과 입식부엌 설치에 따른 다락 변형 등은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시도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현지 조사 후 허가 범위 조정 필요

마. 참고사항(지자체 의견-의성군)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보수사업으로, 의성 소우당을 숙박가능 한 체험시설로 활용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후 자문의견 받아 시행

검 토 사 항

19.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소재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5호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2008년도 제5차회의('08.11.12) 심의결과 민속부분(생활사, 민구, 고서, 인물 등)에 대한 조사 및 타당성 미흡으로 보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령군으로 부터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宜寧 上井里 曹氏古家)
 -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471-2번지 외
 - 소유자 : 000 외
 - 수량: 일괄(건물 8동, 토지 578.7㎡<3필지>)
 - 건축물 지정 8동

구분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곶간채	가묘	별채	마굿간	대문채
양식	정면5칸 측면2 팔작지붕 홀처마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홀처마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홀처마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홀처마	정면2칸 측면2칸 맞배지붕 홀처마	정면6칸 측면2칸 초가지붕 홀처마	정면1칸 측면1칸 초가지붕 홀처마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홀처마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면적	68.72㎡	33.87㎡	21.25㎡	34.42㎡	10.2㎡	64.28㎡	10.48㎡	39.58㎡

- 토지 지정 면적 : 578.7㎡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화정면 상정리	469-1	대	430	1.2	조만우	지정구역
	471-2	대	1,290	406.1	창녕조씨소종중 미강파문중	지정구역
	471-3	대	601	171.4	의령남씨 양정종중	지정구역
합 계	3필지		2,321	578.7		

라. 현지조사의견('12. 03. 16)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000 문화재위원, 000 전문위원>

- 의령 상정리 고가는 대부분 20세기 건축물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집안에 가묘가 있지만, 전통적인 제례방식에 의한 의례는 전승되지 않고, 성주나 삼신 등도 일체 없으며, 세시나 집안에 특별히 전하는 음식 등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민속문화재로서 중요한 지표인 집안의 민속문화로서 전통적인 의례나 민속신앙, 세시풍속 등은 거의 전승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이 집안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만큼 보존·전승의 가치가 높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있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00 문화재위원>

-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는 남부지역 주거건축으로서 근대기 부농가옥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서 보존가치는 인정되나, 중요민속문화재로서 갖추어야 할 민속학적, 건축학적 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건축적, 민속적 특성이 미흡함

〈별첨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1. 문화재위원 000

1.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2. 문화재명칭 :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이 가옥은 의령군 화정면 면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200여m 정도 떨어진 마을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다. 집의 서북쪽 20리에 우뚝 솟은 의령의 주산인 자굴(성문 위의 높다란 망대처럼 우람하게 솟았다는 뜻임)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벽화산(碧華山)이 조씨고가의 진산이 되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조씨고가는 벽화산의 한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은 산자락 끝에 있고, 앞쪽으로는 조산(朝山)인 용시봉이 바라보인다. 용시봉 북쪽으로는 남강이 ㄱ자 꼴을 이루며 감돌아 흐르고 있어 명당의 전형인 배산임수형국을 이루고 있다. 마을 남쪽에서 보면 조씨네 집 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는 누에머리를 연상시키는데, 전체적인 풍수형국의 형상은 누에가 뽕잎을 굵어 먹을 때 고개를 들고 먹는 모습이다. 이 정기가 조씨고가의 가묘로 흘러든다고 한다.

조씨고가와 관련된 인근의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령 화양리 洞安(경남 유형문화재 415호) : 임란 직후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수 백년동안에 걸쳐 많은 양의 동안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귀한 사례로 조선시대 중기 이후 의령지역의 자율적인 향약시행의 전통이 어느 곳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 둘째) 효행비(상정리 금동부락) : 조선 영조 때 이 마을에 살던 조씨 부호군공(副護軍公)이 10세 어린 나이일 때부터 편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였다는 효행을 기리기 위해 문중에서 1935년에 건립하였음. 셋째) 충익사(忠翼祠) : 구룡산(남산) 밑 약7,100여평의 부지에 임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광재우 장군을 비롯한 18명의 의병장과 무명 용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의령읍 중동에 있음. 넷째) 읍강정(擘江亭) : 창녕조씨 참봉공 휘(諱) 계헌공(季憲公)을 추모하여 1923년에 후손들이 상정리에 건립하였음. 이들은 이 지역에 조씨 일문이 이룬 역사문화환경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조씨고가는 1993년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15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4. 연혁 및 유래 :

상정리 창녕조씨 고가에 살고 있는 현감공파(縣監公派)의 파조는 통훈대부 조충가(曹忠可)로 조선 세종대에 함안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입향한 것은 그의 4세손 조계헌(曹季憲, 1537년생)때부터로 그는 후릉참봉(厚陵參奉)을 역임했다. 족보상의 가계로 보면 이 집은 바로 조계헌의 2남 사영(사영, 1577~1624)의 종가이다. 조사영은 곤양 훈도(訓導)를 지냈으며, 만형 조사남(曹士男, 1560년생)은 임진왜란 때 광망우당의 좌장군으로 활약하다가 순국하였다. 만형이 자손 없이 순국하자

사영의 아들 국익(國翼)이 양자로 들어가 조사남의 가계를 계승했다. 조사영의 고손자 명운(命漚)은 영조대 재상 유첩기의 문인이었으며, 그의 둘째 아들 조유성(曹有成, 1721~1766)은 근검절약하여 당대 3,000석의 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시 신아무개로부터 이 가옥을 사들여 현재 9대째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상정리 창녕조씨 현암공파 가문은 16세기에 의령에 입향하여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성장한 사족가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매입한 후 안채는 조사남의 10세손 조기현(曹歧鉉, 1872~1953)이 1946년에 중수하였으며, 사랑채는 1948년에 중수(상량목서 :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戊子九月上九日巳時立柱初十日申時上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두 건물은 중수하였다고 하나 당시의 생활상을 고려한 건축양식적 경향을 반영하여 중건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가 별채는 1915년에 건립(상량목서 : 上之十九年乙卯九月乙亥二十二日巳時立柱)한 후 2002년에 상당 부분을 보수했고, 가묘는 1924년(상량목서 : 孔子誕降二千四百七十五年甲子十二月庚辰)에 지었다. 2002년에는 대문채를 복원하고, 2006년에는 화장실과 욕실을 신축하였다. 2002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동안 행랑채, 대문간채, 별채, 담장 등을 보수 정비하여 지금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들 중 별채, 대문간채는 보수 때 상당 부분 옛 모습을 잃었고, 대문간채는 복원보다는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배치와 건축 현황 및 특징 :

배 치 - 다각형의 대지 중앙부에 안채가 남향으로 앉고 그 앞마당 좌우에 행랑채와 곳간채가 배치되고, 맞은편에 사랑채가 놓여 튼□자형으로 중심영역을 이루고 있다. 안채의 후 동편에는 가묘가 별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북서쪽에는 별채와 광채가 튼 □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별채와 광채는 현 소유자의 종조부가 결혼하여 분가해 살았던 안채와 사랑채로 원래는 담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후대에 지금처럼 담을 허물고 합쳤다고 한다. 사랑채의 동측에는 마굿간이, 남측에는 대문간채가 놓여 있다. 사랑채를 중심으로 행랑채와 마굿간채 사이에는 내외법에 따라 안채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외담을 쌓았다. 별채 북동쪽과 가묘 뒤편에는 각각 화장실과 욕실이 있으며, 별채 우측과 안마당 우측에는 우물이 있다.

18세기 후반 매입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중건과 복원 및 신축 그리고 분가 집과의 통합 등으로 인해 당초의 배치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 채 - 정면 5.5칸, 측면 2.5칸 규모이다. 가운데에 1칸 안대청을 두고 좌우측에 각각 1칸씩의 안방과 작은방을 놓고 이들 정면에는 툇마루를 들였다. 안방과 작은방 배면에는 벽장이 있고 안대청 뒤에는 쪽마루가 깔려있다. 안방 좌측은 측면으로 툇간을 확장하여 뒤쪽에 큰 부엌을 두고 그 앞에 침모방과 전용 부속마루를 두었다. 작은방 우측에는 정면 툇마루보다 두 단 높게 이어진 공루청이 전후로 길게 놓여

있고 그 배면에는 바닥을 낮게 한 좁은 마루 수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루청 주 위로는 안상을 낸 평난간을 둘렀다. 이런 안채의 평면구성은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공간구성(부엌뿔대청뿔)에 경남 지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공루청과 침모방이 더해진 모습이다. 공루청을 누마루처럼 꾸미고 침모방을 양명한 남쪽으로 배려한 것은 온화한 기후와 개방적인 남부지방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대청은 정면을 개방하고 배면에는 머름 없이 울거미널문을 달고, 양측 방 사이에는 각각 외쪽 굽널띠살 문을 내었다. 안방과 작은방 정면의 창호는 머름 없이 안팎에 각각 두 짝의 미단이 솟대살과 여단이 띠살 창호를 낸 이중문이다. 침모방의 안마당 쪽과 부속마루의 부엌 쪽 벽에는 유달리 모양새가 다른 만자(卍字)살 창을 달아 눈길을 끈다. 벽장 창호에는 솟대살 문양을 베풀고, 부엌에는 교살 고창을 두었다. 안채의 창호는 전체적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부터 머름이 없이 키 큰 창호를 달고 고창을 내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안방과 작은방의 이중문은 안쪽 미단이에 아주 낮은 굽널을 받치고 용자살 등으로 영창의 여백의미를 살리지 않고 솟대살을 베푼 것은 흔치 않은 모습으로 주목된다.

자연석 기단 위에 정면에는 방형 정평 초석을 놓아 정면성을 높이고, 나머지는 막돌 덩벙 초석을 놓았다. 기둥은 모두 방주를 세우고 장혀를 수장한 민도리 형식으로 바깥을 직절하고 안쪽을 사절한 보아지가 끼워져 있다. 안대청 상부가구는 3량 가로 합보 한 대량 위에 동자형 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게 했다. 건물의 네 모서리 상부 추녀에는 소박한 마죽연으로 꾸몄다. 옥개부는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합각벽에는 암기와 와편을 포개 놓은 곡선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사랑채 -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앞뒤 두 줄 배기의 겹집이다. 좌측에 전후 2칸의 큰 사랑방을 두고 그 우측으로 전열에는 2칸 사랑대청을, 후열에는 1칸을 앞뒤로 양분한 대청 및 서고와 1칸 빈소방을 놓았다. 큰 사랑방의 좌측면 앞칸과 배면에는 벽장이 마련되어있고, 좌측면 뒤칸과 정면에는 쪽마루가 깔려 있다. 서고는 배면 벽체에 남아 있는 문설주로 보아 원래 대청이던 것을 후대에 지금처럼 개변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대청의 정면은 개방하고 서고와는 두 짝 맹장지로, 큰 사랑방과는 앞뒤로 각각 3분합 들문과 외쪽 굽널 띠살문으로, 빈소방과는 외쪽 굽널 띠살문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큰 사랑방 정면의 창호는 머름을 들이고 안팎에 각각 두 짝 미단이 용자살과 여단이 띠살을 단 이중문인데, 큰 사랑방 문 위쪽에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나타나는 환기창이 나있다. 빈소방의 우측문은 상례와 제례 시 제수 등을 나르고 여인들의 상례 참여를 고려하여 낸 것으로 사랑채에서 유일하게 안채와 동선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한편, 사랑채 우측의 내외담에 나 있는 협문은 후대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 말 이후 내외공간 구분이 약화되고 있음을 읽게 한다.

자연석 바른층쌓기 한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사랑대청 정면 우측 두 곳에만

특히 원주를 세우고 나머지는 방주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장혀를 수장하고 보아지를 끼운 간략한 민도리형식으로 꾸미고, 상부가구는 5량 가로 가구하였다. 자연곡재의 대량 위에는 양봉을 끼운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이 종도리와 그 장혀를 지지하고 있다. 큰 사랑방과 빈소방 사이의 사랑대청 중앙부 양측 기둥 위에는 보처럼 생긴 곡재가 보아지 위에 걸쳐 있는데, 그 표면에는 붓으로 그린 태극문이 여러 개 있다. 부재의 걸침으로 보아 구조적 역할보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그 뜻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옥개부는 홀처마 팔작지붕인데, 용마루가 보기 드물게 짧고 합각벽에는 안채의 곡선 문양과 달리 직선 문양으로 와편장식을 하였다.

가 묘 - 정면 1칸, 측면 1.5칸 규모이다. 정면에는 개방된 틈간을 두고 그 뒤에 전면에만 4분합 여단이 울거미널문을 달고 위에 교살 고창을 낸 감실형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 가묘에 네 짝 여단을 다는 경우는 드문 모습으로 제례의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실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에 제상이 놓여 있다.

자연석 외별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네 우주는 원주를 쓰고 내진주는 방주를 세웠다. 정면의 기둥 상부에는 보아지를 끼워 주두를 놓고 주간에는 소로로 수장하고, 배면은 소로 없이 간략하게 꾸몄다. 상부가구는 3량 가로 대들보 위에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옥개부는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행랑채 - 정면 3칸, 측면 1.5칸으로 좌측에서부터 중문간(온돌방) 온돌방 이 차례로 놓여 있다. 두 온돌방 앞에는 뒷마루를 시설하고, 우측 온돌방 뒤에는 벽장을 두었다. 좌측 온돌방 뒤에는 원래 쪽마루가 있었다고 한다. 좌측 온돌방 정면에는 외여단이 띠살문을, 우측 온돌방 정면과 우측면에는 쌍여단이 띠살문과 눈썹쟁이 창을 내었다. 중문간의 중문은 기둥대문이고, 문지방은 자연 곡재의 월방이다.

건물은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간략한 3량 가 장혀 수장 민도리 형식으로 가구하여 홀처마 맞배지붕을 얹었다.

곳간채 -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된 □형으로 동쪽에 남북으로 긴 3칸통 곳간이 있고 그 남쪽 끝에서 꺾이면서 1칸 고방 2칸 방앗간이 놓여 있다. 방앗간에는 디딜방아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고방은 음식물 갈무리에 적합하게 마루바닥으로 하였다. 곳간의 맨 북쪽 판벽을 제외한 나머지 뒷벽에는 화방벽이 설치되어 있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간략한 장혀 수장 민도리형식이다. 상부가구는 3량 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형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게 했다. 옥개부는 홀처마에 안채와 가까운 북측면에는 우진각 지붕을, 사랑채 쪽 서측면에는 맞배지붕을 얹었다.

별 채 - 원래 현 소유자의 종조부가 결혼하여 분가해 살았던 집의 안채로 지금은 담을 허물고 한 집으로 합쳐서 이용하고 있다. 정면 4칸, 측면 1.5칸으로 좌측에서부터 부엌(온돌방) 대청(온돌방)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부엌을 제외한 3칸 정면에는

뒷마루를 시설하고, 두 온돌방 뒤에는 벽장을 두었다. 대청 뒤로는 벽장 크기만큼 대청을 확장했다. 부엌 좌측으로도 반 칸 정도 늘였다. 대청의 정면은 개방하고 배면에는 흠벽에 두 짝 띠장널문을 달고, 양측 방과의 사이에는 외쪽 굽널띠살 문을 달았다. 두 온돌방 정면에는 쌍여닫이 띠살문이, 부엌에는 쌍여닫이 띠장 널문이 나 있다.

건물은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3량 가 민도리 형식으로 가구하여 이엉을 이은 초가이다.

별채는 뒷마루와 벽장 그리고 대청과 부엌의 확장은 모두 후대에 증축 한 것으로 이 때 지붕도 함께 키워 우측 온돌방 아궁이 위까지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청과 뒷마루의 단차, 가구의 정연하지 못한 결구, 많은 부재 교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확장한 건물 네 모서리 상부의 뿔목 위에 방구메기 모양으로 얹혀있는 곡재가 흥미롭다.

광 채 - 광채는 원래 현소유자의 종조부가 결혼하여 분가해 살았던 집의 사랑채로 별채처럼 담을 허물고 한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좌측에 1칸 온돌방이 있고 그 우측에는 2칸 창고가 놓여 있다. 온돌방의 정면과 측면에는 쪽마루를 깔고, 뒷벽에는 머리 벽장을 두었다. 온돌방 정면과 측면에는 각각 외쪽과 두 짝 여닫이 띠살문이 달려 있고, 배면 머리 벽장 밑에는 작은 정자살 광창이 나 있다. 창고는 정면에 두 짝 울거미널문을 달고 측면과 배면으로는 화방벽을 시설하였다.

건물은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3량 가 장혀 수장 민도리 형식 초가이다. 현재의 부재는 거의 대부분 신재일 뿐 아니라 상부가구와 결구 수법도 와가 모습으로 근년의 보수 때 평면 및 구조양식의 원형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굿간채 -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초가이다. 좌측에는 안채에서 사용하는 내측을 두고, 우측에는 사랑채에서 이용하는 마굿간을 두었다. 내측과 마굿간의 경계 선상에는 담장을 쌓아서 내외 공간구분을 분명히 했다. 마굿간에는 돌로 만든 구유가 남아 있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세장한 둥근 기둥을 세워 3량 가로 꾸민 민도리형식 집이다.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솟을 대문이다. 좌로부터 고평대문간, 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은 기둥대문으로 그 양측으로는 중방 이하에 화방벽을 쌓았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3량 가로 가구한 장혀 수장 민도리집이다. 대문채는 2002년에 복원 사업으로 지었으나 원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6. 종합의견 :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는 경남지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개방적 배치 및 평면구성의 지역성과 근대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18세기

후반 매입한 후 대부분 건물의 중건(20세기 중반)과 분가의 통합, 직접적인 충분한 고증 없이 이루어진 복원과 최근의 신축 등으로 인해 고유의 정체를 읽을 수 있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상당 부분 잃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재전문위원 000

①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의령상정리조씨고가(宜寧上井里曹氏古家)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曹氏古家)는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471-2에 소재한다, 상정리는 마을 정자나무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어 서쪽을 1리, 동쪽을 2리라고 한다. 조씨고가는 현 면소재지가 있는 1리에 있다. 상정(上井)이라는 명칭은 샘(우물) 수질이 특히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앞산은 용수를 닮은 모양이라고 「용시봉(용수봉)」인데 먼당에 「용시샘」이 있다. 용시처럼 바위밑에 사시사철 물이 맑게 솟고 그 샘이 깊어서 상봉(上峰)의 샘, 즉 상정(上井)이란 지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앞산 큰덤을 「구리덤」이고 마주보는 동리 뒷산이 「니비설」(누에에 해당되는 지형)이다. 이 마을은 양잠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 큰활을 만들어 수리덤 바위밑에 묻어둔 뒤로는 누에가 잘 되고 좋은 고치가 생산되고, 명주생산도 많았다고 한다.

마을 앞쪽의 남강이 쳐다보이는 너른 들은 비옥하여 일찍이 청송 심(沈)씨가 자리 잡았는데 우환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창녕 조(曹)씨와 창원 구(具)씨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150여호가 살았지만, 현재 90여 세대로 조씨와 구씨와 동래정씨, 김해 김씨 등이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각성촌락이다.

이 마을 창녕 조씨는 천석꾼 부자(富者)로 살았고 삼사부자(三父子) 진사를 한 집안이며, 한말의 우국충신이자 영남유림을 대표하는 오당(迂堂) 조재학(曹在學)선생의 후손이다. 지정 신청한 상정리 조씨고가에 살고 있는 집안의 가계(家系)는 창녕조씨 현감공파로서 파조는 통훈대부 조충기로 조선 세종대에 함안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의령 상정리에 압향한 것은 그의 4세손 조계헌(曹季憲, 1537-1607)이다. 현재 조씨고가는 조계헌의 6대손 유성(有成, 1750-1802)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성은 조계현의 2남 사영(士英, 1577-1624)의 5대손이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상정리 조씨고가는 조사영(曹士英, 1577-1624)의 고손 조명운(曹命漙, 1721-1768)의 2남 유성(有成, 1750-1802)이 당대 3000석의 부(富)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씨로부터 집을 사들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현재의 집은 당시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조기현(曹岐鉉, 1872-1953)이 1946년 중수하였고, 사랑채는 1948년에 중수한 사실이 상량문에 보인다. 별채로 알려진 ‘一’형 초가집은 1915년 건립한 것으로 보이고 2002년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집은 원래 담이 있었고 별도의 다른 초가집이었으나, 담을 헐고 한 집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가묘은 상량문에 1924년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고가는 1993년 12월 경남도 민속문화재 15호 지정되어 1999년, 200년, 2007년 안채를 비롯한 대부분 건물을 수리복원하고, 해체처리한 광채, 별채 및 복원한 대문채는 신축한 건물과 다름없다.

현재 이 집에는 현 소유주 조병구(曹丙求, 1947 -)와 노모가 기거하고 있고, 전통적인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의한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고가는 1700년대 후반 조씨가에서 매입한 집이라고 하지만, 1915년부터 1948년 사이에 모두 중수(안채 1946년, 사랑채 1948년)와 건축(별채 1915, 가묘 1924)한 것이며, 경남 민속문화재 15호 지정된 이후 다시 수리, 복원과 신축한 건물들이 들어 서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 고가는 상정리 입향조 조계현(曹季憲), 1537-1607)의 2남 사영(士英, 1577-1624)의 5대손인 유성(有成, 1750-1802)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현대 시기까지 이 집안의 종택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가묘는 1924년에 건립되었다. 가묘에는 위패와 현 소유주 조병구(曹丙求, 1947 -)의 증조와 부친 영정 등이 모셔져 있지만, 가묘로서 정돈된 모습은 아니다. 50여년 전에는 정월, 한식, 단오, 추석, 동지에 가묘에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기록화 조사보고서에서는 4대봉사를 하는 기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으나, 조사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개별 조상에 대한 기제사는 지내지 않고 일년에 한번씩 후손들이 모여 합동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전통적인 ‘송조보본(崇祖報本)’의 의례를 이어가고 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는 소유주와 노모만 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 과거 이 집안의 의례를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반적으로 종가에 있는 상주독, 삼신 등도 모시지 않고 기타 세시풍속 등을 지키는 것도 없다는 점도 고가에서 전하는 풍속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문서가 많이 남아 있고, 민속품으로는 반닫이, 옹기, 제기, 껌작 등의 품목이 얼마간 남아 있다.

<종합의견>

의령 상정리 고가는 대부분 20세기 건축물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집안에 가묘가 있지만, 전통적인 제례방식에 의한 의례는 전승되지 않고, 성주나 삼신 등도 일체 없으며, 세시나 집안에 특별히 전하는 음식 등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민속문화재로서 중요한 지표인 집안의 민속문화로서 전통적인 의례나 민속신앙, 세시풍속 등은 거의 전승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이 집안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엿 볼 수 있을 만큼 보존價値의 가치가 높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있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문화재위원 000

①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마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창녕조씨 5세손인 계헌(季憲)이 상정리로 이거한 것은 1592년이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5세손 균호(均灝), 16세손 기현(岐鉉)에 의해 20세기에 들어 이루어졌다. 현재 안채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별채와 광채가 초기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지적도를 살펴보면 지번이 471-3, 471-2로 분필되어 있고, 현재 건축물의 건립년대로 보아 별채가 앞쪽의 사랑채, 안채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 소유자의 증조부가 분가하면서 건

립된 주거라 하나 건축물과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상정리 고가는 초기에 별채와 광채로 이루어진 남부지역의 전형적인 홑집일자형 초가로 이루어진 민가였으나 20세기 전후하면서 앞쪽의 건축물들이 신축, 또는 이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상정리 창녕조씨는 창녕조씨 현감공파에 속하며, 파시조는 충가(忠可)로 세종때 함안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현 상정리에 자리한 것은 파시조의 4세손인 계현이며 현 가옥은 계현의 둘째아들 사남(士男)의 종가이다. 남향하고 있는 안채(1949년 중건, 공능청 확장 등 규모확대)를 중심으로 곶간채, 행랑채, 사랑채(이진건물, 1948년 중수)가 口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 우측편에 마굿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채 앞쪽에 삼간 대문채가 있다. 원래 대문채는 초가였으나 와가솟을대문으로 2002년 복원되었다. 사랑채는 1900년대 주변의 사랑채를 구입하여 이진한 건물이었으나 쇠락하여 1948년 다시 상량한 건물이다. 안채 우측편에 방형담장에 둘러싸인 1924년 건립된 가묘가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부지역 부농의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건립년대 및 건축수법은 일제강점기 전통한옥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는 근대 남부지역 부농주거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된 건축시기가 1900년대 초,중엽으로서 전통적 주거건축의 구성보다는 외래문화의 도입과 전통사회의 변화에 의한 개화기의 가옥형태에 근접하고 있다.

둘째, 복원 또는 중수 시 원형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셋째, 주거민속부분에서 민속품들은 다소 보존되고 있으나 전승되어온 민속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문화재지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인 민속부분에 대한 가치가 미흡하다.

<종합의견>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는 남부지역 주거건축으로서 근대기 부농가옥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지방문화재로서 보존가치는 인정되나, 중요민속문화재로서 갖추어야 할 민속학적, 건축학적 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소재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국가 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군 소재 경북유형 제26호 「탁청정 종가」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安東 光山金氏 濯淸亭公派 宗宅)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외
 - 소유자 : 000(광산김씨 예안파종중)
 - 수량: 일괄(건물 2동, 토지 1,159.9㎡<3필지>)
 - 건축물 지정 2동 : 정침(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6칸×측면 4칸 □자형, 229.88㎡) / 방앗간채(목조와가, 사모지붕, 정면 1칸×측면 1칸, 27.1㎡)
 - 토지 지정 면적 : 1,159.9㎡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와룡면 오천리	358	답	3,630	469.6	광산김씨 예안파종중	지정구역
	359	전	3,421	216.2	김기중	지정구역
	산28-1	임	77,655	474.1	광산김씨 예안파종중	지정구역
합 계	3필지		84,706	1,159.9		

라. 현지조사의견('12. 05. 22)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000, 000 문화재위원>

-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은 안동댐건설로 비록 이견되기는 하였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선 중기 안동 지방 상류주택 배치수법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로 그 가치가 있으며, 또한 건물과 함께 종가에서 보존되어온 고문서, 떡시

루, 멧돌 등의 다양한 민속자료 등도 갖추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시켜 이미 지정된 탁청정과 함께 보존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000 문화재전문위원>

- 종택 가옥의 건축사적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며, 그 외에 주거 공간 속에서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역사적, 민속적 스토리텔링의 콘텐츠가 회복되거나 내용이 충실하게 갖추어진다면 더욱 완벽한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최고의 요리서라 할 수 있는 『수운잡방』과 관련하여 음식문화가 재현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면 더욱 풍요로운 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안동시장 의견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 안동 탁청정종가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건축에 대한 의식이 잘 반영되고 있으며, 김유가 지은 수운잡방은 조선 전기 식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이 보다 앞선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종가 고문서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경상북도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탁청정 종가는 정침, 탁청정, 방앗간채 등을 고루 갖춘 조선시대 상류주택으로서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종가이며, 중요민속문화재 제226호로 지정(1991.8.22)된 탁청정은 탁청정 종가에 부속된 정자로 접빈객 및 학문토론 등의 장소로 활용 되었다는 점 그리고 김유가 지은 「수운잡방」 등 종가의 고문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가의 입지가 확고하고 그 가치 또한 대대로 전승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정 시까지 민속부분 보완

〈별첨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문화재위원 000·000

1.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2. 문화재 명칭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3. 입지환경 및 역사환경

탁청정 종가는 1974년 안동댐 건립에 따라 이진(移建) 되어 기존의 입지환경과 이진 후 입지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존 입지환경

탁청정 종가가 속한 군자마을은 1914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로 통폐합되기 전, 예안현이라는 조그만한 현에 속해 있었다. 군자마을은 예안현 남쪽 낙동강 기슭에 자리잡은 마을로 배면에는 녹전산 줄기가 내려와 주봉인 산남봉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 동쪽에는 어탄산(魚呑山)이 솟아 있고 서남쪽에는 방잠산(方岑山)이 둘러져 있으며 그 중간을 사계(沙溪)가 예안현 경계에서 정곡수(井谷水)와 합쳐져서 낙동강을 이루었다.

2) 이진 후 입지환경

탁청정 종가가 포함된 군자마을은 안동댐 건립에 따른 수몰지구에 포함되어 기존 위치에서 2km 떨어진 외곽 산 중턱(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으로 이전되게 되었다. 현재 입지는 산자락을 계단식으로 깎아 군자마을의 부지가 조성되었고 마을 중심에 넓은 마당공간을 두었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산지형에 따라 건축물들이 배치되었다. 마을 주위를 나지막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으로만 개방되어 있어 안락함이 느껴지며 조망도 양호하다. 마을 앞쪽과 안산 사이에는 안동댐의 지류가 흘러 들어와 전체적으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탁청정 종가는 군자마을의 동쪽 산자락에 이진 되어, 서향으로 배치되었다. 현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탁청정과 함께 일곽을 이루며, 안채에 딸린 사랑채, 행랑채 공간과 정자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변화



| 군자마을 내 탁청정공파 종택 (현재)

4. 연혁. 유래 및 특징

1) 연혁, 유래

광산 김씨는 전라도 광산(光山, 현 광주)의 토성(土姓)으로 고려왕조 후기에 중앙으로 진출하여 왕경(王京)에 기반을 둔 명문가문으로 많은 계파 중에서 김영리(金英利)의 판군기감사공파(判軍器監事公派)와 김천리(金天利)의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가 여말 선초에 안동지방에 정착 하였다고 한다.

안동의 광산김씨는 안동지역의 오천(烏川), 구담(九潭), 가구(佳邱) 등 세 곳에 뿌리를 내려 세거하고 있으며, 광산김씨 20대손인 농수 김효로(1454~1534)가 오천 군자마을에 세거를 하여, 1541년(중종36)년 농수 김효로의 둘째 아들인 김유가 분가하면서 탁청정 종가로 분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15세기 ~ 17세기 탁청정종가 세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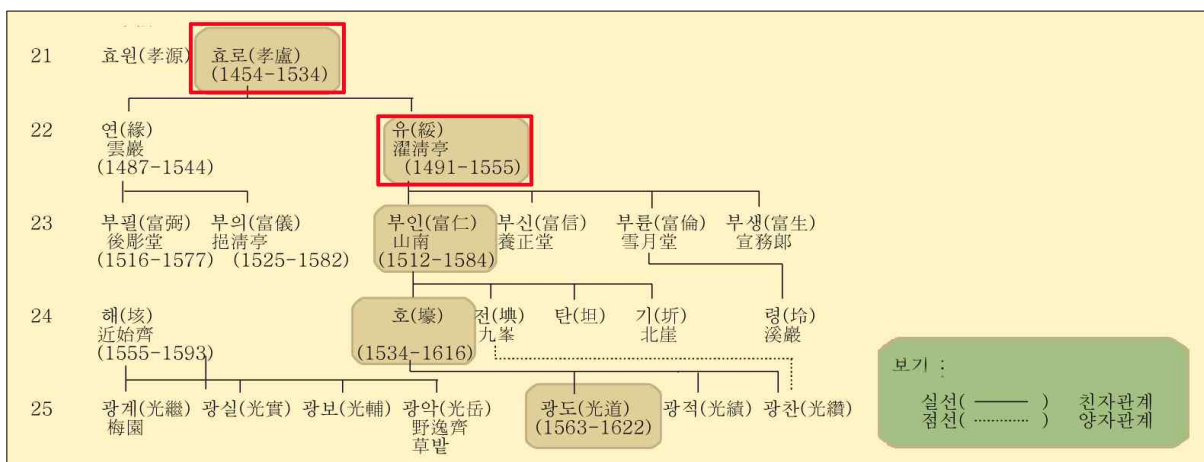


표 2. 15세기 ~ 17세기 탁청정종가 인물

름	자	호	비 고
김효로 (金孝盧)	순경 (舜卿)	농수 (龔叟)	김회의 아들
김 연 (金緣)	자유 (子由)	운암(雲巖) 죽연(竹淵)	김효로의 아들, 母 양성이씨 군수 이지(李持)의 따님
김 유 (金綏)	유지 (綏之)	탁청정 (濯淸亭)	김효로의 아들, 김연의 아우, 생원시 급제
김부인 (金富仁)	백영 (伯榮)	산남(山南)	김유의 아들, 母 순천김씨 김수홍(金粹洪)의 따님
김부신 (金富信)	가행 (可行)	양정당 (養正堂)	김유의 아들, 사마시 급제
김부륜 (金富倫)	돈서 (惇敍)	설월당 (雪月堂)	김유의 셋째 아들, 김부인의 아우
김 기 (金 圻)	지숙 (止叔)	북애 (北厓)	김부인의 아들, 임란 당시 김해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정제장을 맡고, 군병 모집을 겸함
김 령 (金 垓)	자준 (子峻)	계암 (溪巖)	김부륜의 아들, 母 평산신씨, 한양 주자동에서 태어남(父의 관직생활)

전언에 따르면 탁청정 종가는 조선후기 한차례의 화재로 규모가 축소되어 증건된 것으로 탁청정 종가의 정확한 건립시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기존의 군자마을 대지가 수몰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위치에서 2km 떨어진 외곽 산 중턱(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7)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탁청정종가의 향은 달라졌지만 기존 배치를 따라 건물의 형식은 원형과 동일한 형태로 이축되었다고 한다.

이건을 위한 해체작업 중 밀폐된 누상공방(樓上空房)에서 3,000여 점의 고문서(古文書)와 유물(遺物)들이 수습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고려말(高麗末)부터 조선조(朝鮮朝)에 이르기 까지 600여 년간의 문헌(文獻)기록으로 이 중 고문서 7종 429점과 전적 13종 61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군자마을 내 송원각(崇遠閣)에서 공개 전시되고 있다. 이 중 편액 등은 도난 방지를 위해 안동 국학원에 기증 보관 중이다.

현재 군자 마을에는 탁청정 종가를 비롯한, 탁청정(중요민속자료 제226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소장 고문서(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소장 전적(보물 제1019호), 후조당 유물(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64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어지고 있다.

2) 건물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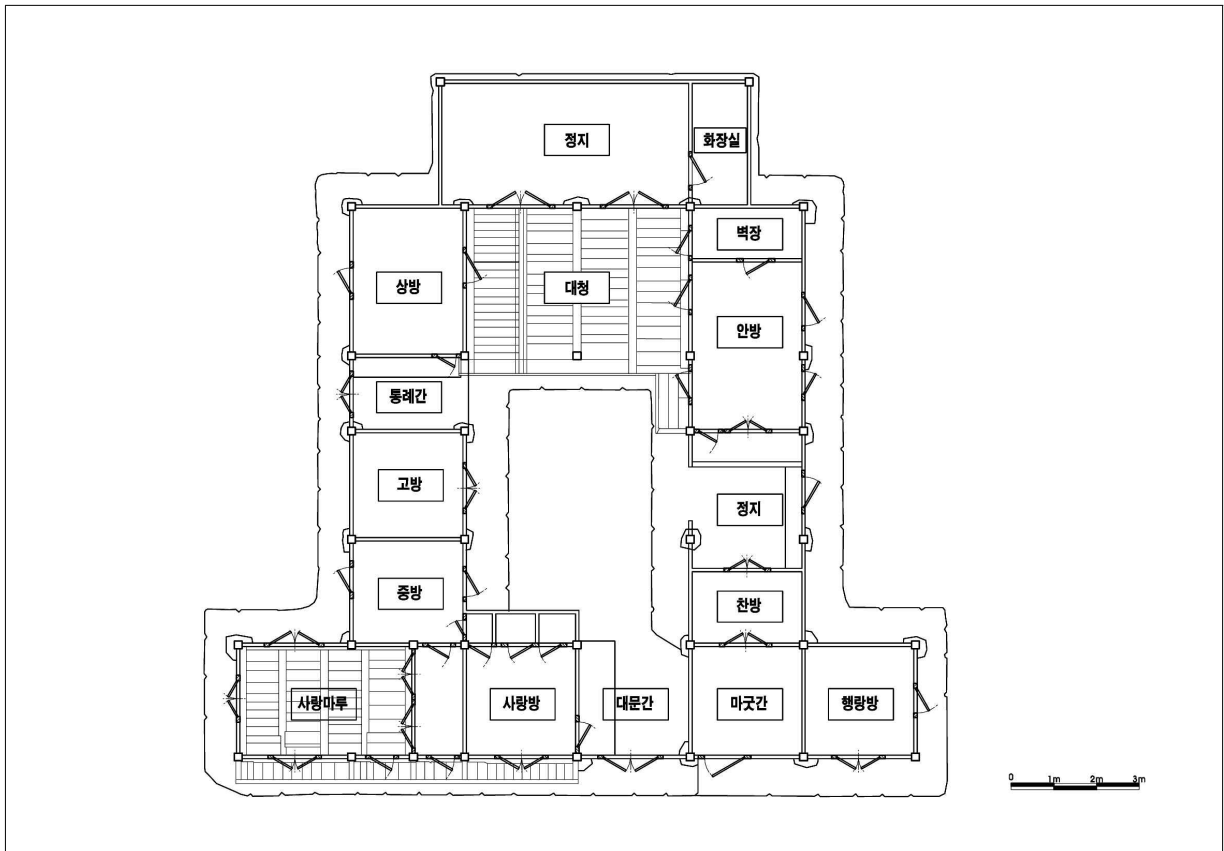
탁청정 공과 종택은 정면의 대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사랑방, 사랑마루방을 두고 우측으로 마굿간, 행랑방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행랑채의 뒤쪽에 위치한 안채는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상방과 안방을 두고 상방의 앞쪽으로는 통래칸, 고방, 중방을 안방의 앞쪽으로는 정지, 찬방을 두어 행랑채와 안채, 그리고 좌,우 익사가 연

결된 안동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口'자형 평면의 상류주택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3) 건물의 규모 및 특징

탁청정 공파 종택의 공간구성은 정면의 대문간 좌측에 사랑방과 사랑마루방, 우측에 마굿간과 행랑방을 배치하여 정면은 6칸이다. 안방과 안대청 그리고 상방으로 연결되는 '정침영역'은 가장 안측에 위치하며, 좌 · 우익사가 안채영역과 대문간을 연결하여 내부 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좌측편으로는 디딜방아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탁청정 공파 종택이 이축되기 전에는 디딜방아간이 건물 우측에 위치하여 우익사의 정지공간에서 출입하기가 수월했다고 전해진다.

건물의 구조는 민도리 형식의 간략한 3량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단과 기둥의 고저차를 조정하여 공간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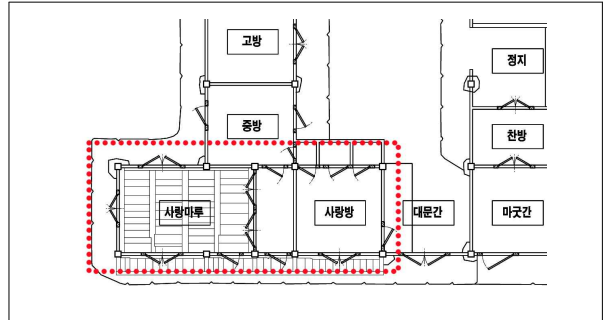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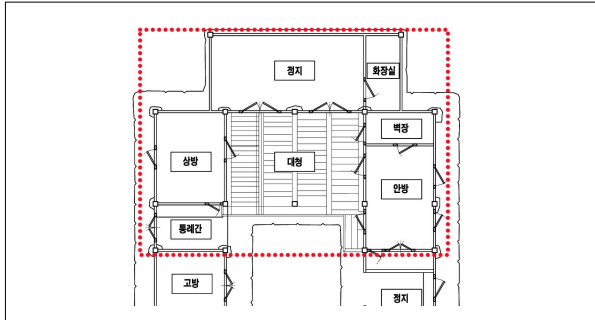
| 종가 평면도

- 안채 공간

안채는 우물마루로 된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중부가 기거하는 2칸 안방과 좌측에는 며느리가 기거하는 1칸 상방을 두고 있다. 안대청 뒷마당 쪽으로는 근래 정지공간과 화장실이 확장되어 달려 있으며 뒷마당 쪽으로 개폐되었던 안대청의 판문이 정지공간의 출입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랑채 공간

사랑채 공간은 3칸으로 사랑방과 사랑마루가 각각 1칸 반씩 차지하고 있다. 사랑방의 배면에는 반침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침이 3칸으로 분리되어 2칸은 사랑방의 수납공간으로 1칸은 중방의 수납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

| 사랑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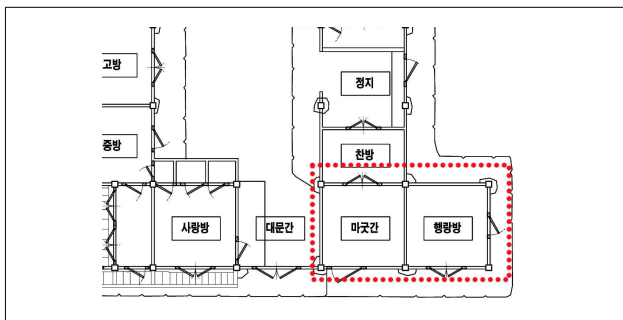
-행랑채 영역

행랑채는 마굿간과 행랑방이 각각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굿간의 상부는 원래 다락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마굿간은 화목을 쌓아 차폐시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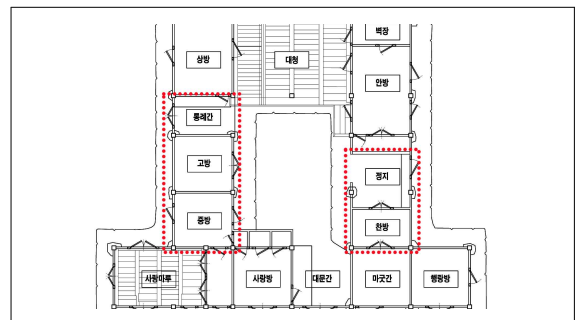
- 좌,우 익사 영역

좌익사는 통래칸과 고방, 중방이 배치되어 있다. 고방은 현재 입식 주방으로 일부 개조되어 있으며 통래칸은 원래 기능에 따라 외부 장독대와 안채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우익사는 안방과 접하여 정지, 찬방이 배치되어 있다. 좌익사에서 통래문으로 사용하는 주칸이 우익사에서는 안방과 통합되어 안방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정지는 비교적 변형 없이 잘 보존되고 있으나, 찬방은 욕실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다.



| 안채공간



| 사랑채 공간

< 종합의견 >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은 1541년(중종36)년 김유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후기 한차례의 화재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정확한 건립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이축(移築)되었고, 현대생활에 맞게 부엌과 화장실 등이 증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1974년 이축 당시 기존 평면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 보, 도리 등도 교체되지 않고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근래 증축된 부엌도 안채 배면에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되어서 기존 건축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건물의 가구형식은 민도리 3량구조로 단아하면서도 간결한 기법으로 구성되었다. 사랑채와 안채에 설치된 반침은 분리된 두 공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방반침은 안방과 안대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랑방 반침은 사랑방과 중방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탁청정공파 종택 내에는 이미 지정된 탁청정과 디딜방아, 제기, 각종 고문서 등 과거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민속생활자료 등도 건축물과 함께 잘 보존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은 비록 이진된 건물이긴 하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선후기 이 지방 상류주택 배치수법과 목구조 세부기법 등이 잘 남아있는 건축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종택에 보관되었던 다양한 민속자료와 증가음식(수운잡방)도 계승되고 있어, 이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탁청정과 함께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시켜 보존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재전문위원 000

① 문화재 종류

중요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광산김씨 예안공파의 종손이 거주하며, 제례의식, 각종 문중행사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원래의 건물은 현재보다 약 2km 동쪽에 있었으나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됨, 이진 과정에서 좌향은 바뀌었으나 가옥 구조에는 큰 변화 없었음. 당시의 건축 형식과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거 생활 전반에 대한 풍속과 민속을 유지하고 있음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541년 건립된 이래로 광산김씨 예안공파의 종가집으로 건축형식의 변형없이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중기의 건축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판단됨. 또한 「수운잡방」 등을 비롯한 여러 고문서는 당시의 생활사는 물론, 사회사 및 경제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중요민속문화재 제226호로 기지정되어 있는 '탁청정'과 연결된 공간으로 종택의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 있음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재의 군자마을 속에 다른 고가옥들과 함께 어울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각에서 관리될 필요 있음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현재 거주하시는 후손이 정성스레 가꾼 흔적이 확인되지만 현재 가옥 건축재의 부식이 적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종택 가옥의 건축사적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며, 그 외에 주거 공간 속에서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 현재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역사적, 민속적 스토리텔링의 콘텐츠가 회복되거나 내용이 충실하게 갖추어진다면 더욱 완벽한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최고의 요리서라 할 수 있는 『수운잡방』과 관련하여 음식문화가 재현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면 더욱 풍요로운 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별첨 2〉

검 토 의 견 서

□ 문화재명 : 탁청정종가(安東 濯淸亭宗家)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 탁청정종가는 정침, 탁청정(濯淸亭), 방안간채 등을 고루 갖추어 조선시대 상류주택으로서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건축에 대한 의식이 잘 반영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서 깊은 종가입니다.
- 1991년 8월 22일 중요민속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된 탁청정은 탁청정종가에 부속된 정자로 접빈객(接賓客) 및 학문 토론 등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남성영역으로 정침의 사랑채가 확대되어 별동의 사랑채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또한 김유(金綏, 1481~1552)가 지은 식품 가공 및 조리 방법서인 『수운잡방(需雲雜方)』은 허균(許筠)의 『도문대작(屠門大嚼)』보다 약 70년을 앞서고, 정부인 안동장씨의 『음식디미방』보다 약 110년 전에 쓰인 요리서로서 조선 전기의 식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이 책보다 앞선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식품 조리사의 시대적 추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 아울러 『수운잡방』을 비롯한 종가 고문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광산김씨 예안파의 특성과 지역의 당시 시대 여건들을 알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안동의 탁청정종가는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가의 입지가 확고하고 그 가치 또한 대대로 전승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 04. .

안 동 시 장



보고 사항

21.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양주 백수현가옥 (중민128)	경기 양주시	000	[단독주택 신축(한옥 5동)] ○ 위치 : 경기 양주시 남면 매곡리 산 8번지(이격거리 : 158m) ○ 대지면적 : 4,882m ² ○ 건축/연면적 : 548.1m ³ (109.62m ² × 5개동) / 759.35m ² (지하주차장 포함) ○ 층수 및 높이 : 1층(5개동), 6.358m ○ 구조 : 목구조, 한식기와 ※ 소위원회 구성 및 현지조사('12.4.27 / 문화재위원 박강철, 김용수, 정명섭, 전문위원 남해경)	불허	'12. 5.7.
경주 양동마을 (중민189)	경북 경주시	000	[양동마을회관 리모델링] ○ 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지정구역) ○ 신청내용 - 마을회관 내부 리모델링 - 마을회관 배면 벽장 설치 ※ 서면검토('12.5.14 / 문화재위원 정명섭)	허가	'12. 5.15.